

인권증중문화 정착을 위한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 총 평

-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 이행사항을 지표에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 인권 경영 메뉴얼을 기준하여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분야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인권경영을 실시하고자 체계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항목들을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 2023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총154개의 지표(예144개, 보완8개, 해당없음2개)에서 기관운영은 평점 97.7점(전년대비 4.6점 ↑), 사업운영은 평점 95점(전년대비 1.5점↑)으로 **총점 96.3점(1등급)**으로 작년대비 **3점 높은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음.
- ▶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8개의 인권이슈 중 중대성 평가 결과, **3개의 주요인권이슈** (기관운영의 산업안전보장, 사업운영의 안전보장과 지역주민 환경보호) **선정**하여 **개선과제 도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매년 평가지표를 공단 운영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인권침해 요소 발굴 및 사전예방을 통해 인권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I.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	1
II.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	3
III. 2023년 인권영향평가 종합평가 .....	4
IV.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6
V. 중대성평가를 통한 인권이슈 선정 .....	12
VI. 종합평가 의견 .....	13
VII. 향후 계획 .....	14

< 붙임자료 >

1. 2023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2. 2023년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1부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우리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임

## I 인권영향 평가 실시 개요

###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8.08.)
- 2023년 인권경영추진계획 [감사안전팀-21(2023.01.04.)]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감사안전팀-1469(2023.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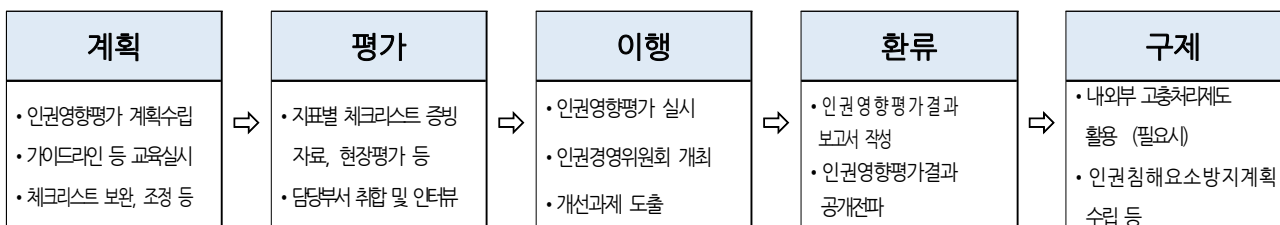
### □ 추진배경

- (정부정책의 이행)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 우선 인권책임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08.)
-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침해 보호의무, 인권존중 책임의무, 인권침해 구제수단 마련 등 인권중시 기업문화 확립

### □ 실시개요

- 평가기간 : 2023. 11.01~ 11.30
- 평가대상
  - 기관운영 분야 : 공단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 파악
  - 사업운영 분야 : 공단 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 파악

### ○ 추진절차



○ 평가방법

- 1차 평가 : 분야별 주관부서 지정 후 자체 평가
- 2차 평가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인권경영위원 평가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설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련규정, 문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수치화

○ 평가지표

- **기관운영** 분야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9개분야 133개 지표 설정

연번	분 야	연번	분 야
1	인권경영체계의 구축(32문항)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9문항)
2	고용상의 비차별(14문항)	7	환경권 보장(13문항)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14문항)	8	고객 인권보호(13문항)
4	강제노동의 금지(7문항)	9	직원 인권보호(10문항)
5	산업안전보장(21문항)		

- **사업운영** 분야 : 누비자 사업부문 5개분야 21개 지표 설정

연번	누비자사업	비 고
1	공정운영	3문항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3문항
3	안전보장	6문항
4	근무자 인권보호	5문항
5	지역주민 환경보호	4문항

○ 평가점수 체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등급 체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점	100점 ~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 II

# 인권영향평가 결과

### □ 전년도(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시 개선사항 이행사항 점검

구 분	권고 및 개선 요구사항	이 행 사 항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인권경영체제의 구축&gt; 용역업체 등 외부이해관계자 인권교육, 캠페인, 안전보건협의회 운영되지만 참여 확대 필요</li> <li>▪ &lt;환경권보장&gt; 공단의 친환경계획 수립 미흡</li> <li>▪ &lt;산업안전보장&gt; 비상계획 수립시 현지주민도 대피시 비상대응 방법을 알수 있도록 지역 당국과 함께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캠페인, 직장내 괴롭힘, 4대폭력교육 등 참여, 안전근로협의회 등 협력상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캠페인 진행함</li> <li>▪ 23년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 (근로자 및 시민 환경정보제공, 환경훼손 최소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참여, 스마트 가든 설치, 화장실 종이타월 금지,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절약 등)</li> <li>▪ 소방서, 보건소 등 13개 유관기관 재난안전합동 훈련(4.26) 실시, 비상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사무실 게시, 재난안전매뉴얼 구축시 지역 당국과 연계, 재난안전분야 국민재난안전연합회 업무 협약등 실시</li> </ul>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근로자 인권보호&gt; 응급상황 대비 자동 심장충격기, 비상약품 구비등 내부직원 보호 강화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장내의 자동심장충격기(2대) 관리 강화 및 공영자전거 배송정비(지점)에 응급상황 대비 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예산 확보(2024년 구입 예정) 그 외 정비원 전원 특수검진실시, 산업보건 의사 위촉 운영으로 내부직원 안전보장 강화 됨.</li> </ul>

### □ 2022년 실적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조치 완료

전기평가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이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관대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으로 위원구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감사안전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위원 외부위원 증원(1명) -인권경영위원(8명) 구성 개편(23.12.22) :내부5,외부3 → 내부4,외부4(내부1명↓,외부1명↑) ※ 임기만료에 따라 외부위원 신규 위촉(3명:여성2,남성1) - 관대화 현상 사전 예방 - 투명성, 객관성 확보 (변호사,노무사,여성단체대표,다문화가정대표) - 여성위원 강화(2명→3명)</li> </ul>

### III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종합평가 : 96.3점(1등급)

#### □ 평가분석

2023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97.7점** 전년대비 4.6점 ↑

연번	평가지표	23년	22년
	총점	97.7	93.1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8.8	92.5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91.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100
5	산업안전보장	97.5	96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0	77.7
7	환경권 보장	96.7	84.4
8	고객 인권보호	94.4	96.6
9	직원 인권보호	95.8	100

2023년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95점** 전년대비 1.5점 ↑

연번	평가지표	23년	22년
	총점	95	93.5
1	공정운영	100	83.3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100
3	안전보장	91.7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100
5	지역주민 환경보호	83.3	100

□ 기관운영(97.7점) /31개항목/133개지표

분 야	항 목	분야 점수	지표 총괄	항목 점수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8.8	32	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100	6	6	0	0	0	0
				②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5	5	0	0	0	0
				③ 인권경영제도화 위한 필요조치	100	5	5	0	0	0	0
				④ 인권경영성과	92.9	7	7	1	0	0	0
				⑤ 구제절차 마련	100	6	6	0	0	0	0
				⑥ 인권교육시행	100	3	3	0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14	① 고용상 비차별	90	5	4	1	0	0	0
				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6	6	0	0	0	0
				③ 비정규직근로자 비차별	100	3	3	0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4	①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4	4	0	0	0	0
				② 노조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5	5	0	0	0	0
				③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이행	100	5	5	0	0	0	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7	100	7	7	0	0	0	0	
5	산업안전보장	97.5	21	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100	5	5	0	0	0	0
				② 작업장 안전	100	4	4	0	0	0	0
				③임산부 및 장애인 등 홍보	87.5	4	3	1	0	0	0
				④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0	5	5	0	0	0	0
				⑤ 산업재해피해근로자 지원	100	3	3	0	0	0	0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0	9	①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3	3	0	0	0	0
				② 모니터링 실시	100	2	2	0	0	0	0
				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4	2	0	0	0	2
7	환경권 보장	96.7	13	① 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90	5	4	1	0	0	0
				② 환경정보의 공개	100	3	3	0	0	0	0
				③ 비상계획 수립	100	5	5	0	0	0	0
8	고객 인권보호	94.4	13	① 고객보호 위한 법령 준수	100	4	4	0	0	0	0
				② 고객 사생활 보호	100	6	6	0	0	0	0
				③ 고객보호 구제절차	83.3	3	2	1	0	0	0
9	직원 인권보호	95.8	10	① 직장내 괴롭힘 금지	83.3	3	2	1	0	0	0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100	3	3	0	0	0	0
				③ 일·가정 양립	100	2	2	0	0	0	0
				④ 감정노동자 보호 <small>신규</small>	100	2	2	0	0	0	0
합 계		97.7	133	97.7	133	126	6	0	0	2	

□사업운영(95점)5개항목/21개지표

분 야	항 목	분야 점수	지표 총괄	항목 점수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누비자	95	21	① 공정운영	100	3	3	0	0	0	0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3	3	0	0	0	0
				③ 안전보장	91.7	6	5	1	0	0	0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5	0	0	0	0
				⑤ 지역주민 환경보호	83.3	4	2	1	0	0	1
합 계		95	21	95	21	18	2	0	0	1	

IV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기관운영 성과결과 : 97.7점

분 야		항 목	분야점수	항목점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98.8	100
		②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③ 인권경영제도화 위한 필요조치		100
		④ 인권경영성과		92.9
		⑤ 구제절차 마련		100
		⑥ 인권교육시행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96.7	90
		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③ 비정규직근로자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② 노조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③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히행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① 강제노동 금지	100	100
5	산업안전보장	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97.5	100
		② 작업장 안전		100
		③임산부 및 장애인등 홍보		87.5
		④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0
		⑤ 산업재해피해근로자 지원		100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①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100
		② 모니터링 실시		100
		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7	환경권 보장	① 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96.7	90
		② 환경정보의 공개		100
		③ 비상계획 수립		100
8	고객 인권보호	① 고객보호 위한 법령 준수	94.4	100
		② 고객 사생활 보호		100
		③ 고객보호 구제절차		83.3
9	직원 인권보호	① 직장내 괴롭힘 금지	95.8	83.3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100
		③ 일·가정 양립		100
		④ 감정노동자 보호 <small>신규</small>		100



### 1. 인권경영체제 구축 : 92.5점 (6개 항목, 32개 지표)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제도화 필요조치	인권경영성과	구제절차마련	인권교육시행
100	100	100	92.9	100	100
<p>• 평가결과</p> <p>공단은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인권존중 정책 선언을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전담부서,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공단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단 인권경영성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고 있다.</p> <p>• 개선과제</p> <p>인권인식조사, 인권영향평가등의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을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보고를 하고, 해당년도의 인권경영보고서를 12월말에 대내외 공유하고 있음. 인권경영성과의 결과보고는 익년도 상반기 인권경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년도 인권경영보고서를 하반기 인권경영위원회의 최종검증을 거친 후 대내외에 공개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p>					

### 2. 고용상의 비차별 : 91.1점 (3개 항목, 14개 지표)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90	100	100
<p>• 평가결과</p> <p>공단은 고용상의 비차별부문에서 성별, 종교,장애, 나이, 출신등을 이유로, 고용상에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있음</p> <p>• 개선과제</p> <p>고용상의 차별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공단의 경륜사업 특성상 3일 근무자들과 누비자사업을 위한 주5일 근무자들의 복리후생제도(종합검진비 지원 등)부문에 일반직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관리규정에 반영 검토할 필요가 있음</p>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00점 (3개 항목, 14개 지표)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100
<p>• 평가결과</p> <p>공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3개 노조가 복수로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으며,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및 분기별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4회, 분기별 실시)하여 소통되고 있음.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p>		

#### 4. 강제노동의 금지 : 100점 (1개 항목, 7개 지표)

강제노동금지
100
<p>• 평가결과</p> <p>공단은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취업규정」에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시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정한 근로계약, 신분보장 등 부당한 노동금지 예방을 제도화 하고 있음</p>

#### 5. 산업안전 보장 : 98점 (5개 항목, 21개 지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홍보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100	87.5	100	100
<p>• 평가결과</p> <p>공단은 2023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안전보건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ISO22301)을 매년 재인증하여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있다.</p> <p>또한 재난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보건경영위원회(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4회이상), 안전보건협의체(12회이상),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집체16시간이상)과 관리감독자 성과 평가, 안전보건책임자(경영자) 등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개선과제</p> <p>공단은 안전보건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취업규정」에 따라 법정휴가, 임산부 보호, 출산전후 휴가 등 「모자보건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유 중인 휠체어가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현재 장애인들이 회사내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부서(고객서비스팀)에서는 휠체어 구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음</p>				

####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100점 (3개 항목, 9개 지표)

협력회사 등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100	100
<p>• 평가결과</p> <p>공단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의무이행을 요구하며, 계약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전 부서와 계약업체 등에게 인권경영계약 준수여부를 설문조사, 현장방문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재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거래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2023년 모범거래모델가이드라인 도입을 규정화 하여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이행서약을 징구하도록 하여 공정한 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또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최고(S)등급 획득하여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 7. 환경권 보장 : 96.7점 (3개 항목, 13개 지표)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정보의 공개	비상계획 수립
90	100	100
<p>• 평가결과</p> <p>공단은 환경경영체제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전부서별 플로깅 운영, 반려해변 분양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을 확정하여 공지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on-line)에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공유)하고 있음.</p> <p>또한 2023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ISO22301) 재 인증받았으며, 비상대응계획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체계화 된 재난모의훈련을 13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하였음</p> <p>• 개선과제</p> <p>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b>환경교육 정기적으로 실시</b>하고 안전과 연계하여 환경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p>		

## 8. 고객 인권보호 : 94.4점 (3개 항목, 13개 지표)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고객사생활 보호	고객보호 구제절차
100	100	83.3
<p>• 평가결과</p> <p>공단은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알권리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2023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평가 최고등급(S)획득 하는등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고객, 방문객 등)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출주표, 누비자이용 리프렛, 터미널, 누비자 보관 현황 등) 안내 및 물품납품 시 검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할안·환불연기 규정 등 시설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여 고객보호 구제방법을 제공하고 구제절차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p> <p>• 개선과제</p> <p>고객이 이용 가능한 인권침해 관련 신고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고객보호 구제절차부문에서 공단의 문의사항에 대한 <b>고객의 소리를 접근성이 용이한 게시판 운영</b>으로 고객의 소리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2023년12월기준: 질문과 답변 5건으로 타기관에 비해 홈페이지 활용 질문 현저히 낮음)</p> <p>예시: 공단 홈페이지 고객광장&gt;참여마당&gt;질문과 답변 → <b>“고객의 소리”</b>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p>		

9. 직원 인권보호 : 95.8점 (3개 항목, 8개 지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일·가정 양립	감정노동자 보호 <small>신규</small>
83.3	100	100	100

• 평가결과

공단은 직장내 갑질근절 추진계획 수립하여 윤라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한 담당조직 운영, 홍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원스톱 제도,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운영,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신규지표를 반영하여, 갑질,폭언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자건강보호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문구와 인권 슬로건 스티커 부착, 인권 명함 제공,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공단차원의 단합대회, 워크샵, 건강상담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음

• 개선과제

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2021.10.14.)관련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2023.4월, 고용노동부 기준)참조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직장내 괴롭힘 규정에 반영 개정이 필요함

- ①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시행령: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최고 1천만원)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 ② (사용자 의무 강화)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함(법 제76조의3제2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법 제76조의3제7항)
- ③ (사용자 제재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최고 5백만원)를 부과함(법 제116조제2항)

□ 사업운영분야 평가결과: **95점** (5개 항목, 2개 지표)

분 야	항 목	분야점수	항목점수
누비자	① 공정운영	95	100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③ 안전보장		91.7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
	⑤ 지역주민 환경보호		83.3

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100	91.7	100	83.3

• 평가결과

공단은 시설이용객에 차별 등에 차별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방지대책 방안 및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 고객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운영을 하고 있음  
 창원시민 만13세 이상(자전거운전 가능한 사람) 누비자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누비자 이용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콜센터(상담원) 운영, 자전거 배송정비, 이용자 보험 가입 등 타 지방자치단체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본보기(선도)가 되고 있음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감면대상 확대(한부모,다문화가정,장애인,취약청소년),외국인이 누비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문 안내문, 리플렛을 구비,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추가 확대 운영, 공유형 자전거 자체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누비자 및 자전거문화센터 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시민홍보단 간담회 개최, 고객게시판을 통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용고객 불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 권리제한을 개선하고 있음  
 누비자 안내 리플릿, 카카오톡 채널, 터미널 키오스크 운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할인·환불·연기 규정 등 시설 이용과 사고시 창원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관련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공단은 누비자 관련하여 올바른 이용법, 이용상담, 기상정보, 도로정비, 누비자 상태등을 상시 점검하고 누비자 사고 발생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누비자 이용 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산업보건(사) 위촉 운영으로 근골격 질환 진료상담,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등), 교통안전교육 및 현장실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권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공단은 지역주민의 환경보호를 위해 서비스,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부조리 등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개선과제

공단은 공단시설물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 및 안전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창원시 SBRT(직행버스)운행을 위한 도로공사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협소(폭1.8m →1.2m 변경)하여 누비자 이용고객의 안전보장에 대한 교육이 안전문구 등 보완 강화되어야 함.

또한 공영자전거 공유형플러스 누비자 전면 전환시행으로,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없애고 도어락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 보행통로에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반납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예시: c형 전용 보관대 전면 설치 확대 등)

# V 중대성평가를 통한 인권이슈 선정

## □ 중대성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한 「인권경영보고 및 평가지침(2022)」에서 ①기업(기관)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실질적 리스크를 ②중요성에 따라 식별분석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③이를 중심으로 방지대책(대응계획)을 강구하는 인권실사(인권영향평가 포함)절차 및 중대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 중대성평가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부서와 함께 영향심각도,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개선과제 선정함

요소 평가 등급별 판단 기준			중대성평가 수준(5+5)					
요소	등급	판단기준	영향 심각도	+	발생 가능성	⇒	총점	수준
영향 심각도	5	매우심각한 영향	5		+		5	⇒
	4	매우 중대		9점				
	3	중대	8점					
	2	보통	7점	중				
	1	경미	6점					
발생 가능성	5	확실	3	+	⇒	5점	하	
	4	높음	2			4점		
	3	보통				3점		
	2	낮음	1			2점		
	1	희박				1점		

## □ 주요 인권이슈 선정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8개의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3개의 주요 인권이슈를 선정하였음.

분 야	항 목	중대성평가 수준(5+5)				비 고	
		영향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수준		
<b>기관운영</b>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④ 인권경영성과 →7.인권경영성과보고내용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 검증을 거친다.	2	2	4	하	
2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3.임금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4	하	
3	산업안전보장	③임상부 및 장애인 등 홍보 →장애인들이 회사내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3	2	5	중	주요인권이슈
4	환경권 보장	① 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5.환경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1	2	3	하	
5	고객 인권보호	③ 고객보호 구제절차 →1.고객이용 가능한 인권침해관련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3	4	하	
6	직원 인권보호	① 직장내 괴롭힘 금지 →1.직장내 괴롭힘방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에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2	4	하	
<b>사업운영</b>							
7	안전보장	③ 안전보장 →4.누비자를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도구가 정비되어 있다.	4	3	7	중	주요인권이슈
8	지역주민 환경보호	⑥ 지역주민 환경보호 →5.지역주민,이용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3	6	중	주요인권이슈

□ 주요 인권이슈 개선과제

분 야		항 목	개 선 과 제	주관부서
<b>기관운영</b>				
1	산업안전 보장	③임산부 및 장애인 등 홍보 →장애인들이 회사내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휠체어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하여 신속히 구입 조치 필요	고객서비스팀
<b>사업운영</b>				
2	안전보장	③ 안전보장 →4.누비자를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 누비자 이용고객의 안전보장에 대한 교육이 안전문구 등 보완 강화	공영자전거팀
3	지역주민 환경보호	⑤ 지역주민 환경보호 →5.지역주민,이용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시민 보행통로에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반납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공영자전거팀

## VI 종합평가 의견

### 총 평

-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 이행사항을 지표에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기준하여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분야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인권경영을 실시하고자 체계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항목들을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 2023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총154개의 지표(예144개, 보완8개, 해당없음2개)에서 **기관운영은 평점 97.7점(전년대비 4.6점 ↑), 사업운영은 평점 95점(전년대비 1.5점↑)으로 총점 96.3점(1등급)**으로 작년대비 **3점 높은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음.
- ▶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8개의 인권이슈 중 중대성 평가 결과, **3개의 주요인권이슈** (기관운영의 산업안전보장, 사업운영의 안전보장과 지역주민환경보호)**선정**하여 **개선과제 도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매년 평가지표를 공단 운영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인권침해 요소 발굴 및 사전예방을 통해 인권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및 전과정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인권경영 민간 확산)
  - (내부공개) 평가결과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 공개
  - (외부공개) 홈페이지 게시, 타 공공기관 공유 등을 통한 외부 공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개선과제 대응방안 수립 이행
  - 인권침해 요소 등 관련 부서별 개선 요청 및 점검(2024년 3월 이내)
  - 차기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반영

- 붙임 1. 2023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2. 2023년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1부